

제七十五호

# 서울특별시령

발행소 서울특별시

## 훈 령

서울특별시專決規程

(四二八一.一.一)  
서울市訓令第一號

改正 (四二八九.八.二十五)  
서울특별시訓令第十九號

※ (四二九二.十.一)  
서울특별시訓令第七九號

第一條 副市長、各局長 및 各課長은 그所管事務에 關하여 本規程에 依하여 專決한다 但 專決事項이라든가 重要 또는 異例에 屬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것은 事前에 副市長은 市長의 各局

단기四二九二년九月三十일  
단기四二九二년十月一日  
공무원법 단기四二九二년六月一日  
공무원보조제 三〇八 조  
서울특별시장  
발령인 임 호 순  
공 보 파 장 홍 순  
행정인 이 승 부  
인쇄소 정부간행물배급주식회사

관	주	조	고	공	반	사	보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	.....	.....	.....	.....	.....	.....
.....	.....	.....	.....	.....	.....	.....	.....

長은 副市長의 各課長은 主務局長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第二條 專決事項은 本 他局 課間에 關聯이 있는 것은 合議하여야 하며 그 意見이 相違할 때에는 上司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第三條 本規程에 依하여 專決을 委任 받은 者는 그 專決事項에 比하여 輕易한 事項을 專決한다  
 第四條 副市長은 다음 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 五級 國家公務員과 四級 地方公務員의 任免  
 二、 局、課 및 區別公務員의 定員 配定  
 三、 課長의 休暇 願 屈 處理  
 四、 三級 乙類 國家公務員과 二級 地方公務員의 管外 出 張 命 令 但 本廳의 課長은 除外한다  
 五、 一件 當 五十萬圓 以內의 補助金 交付

四二九二

- 六、五十萬圓以下の設備費支出
- 七、一件當百萬圓以下の工事執行
  - 一件當五十萬圓以下の物件賣買努力の供給又運搬
  - 一件當五萬圓以下の物件貸賃借
- 十、戶別稅五十等以下の再興議申請處理
- 十一、交通稅の測定
- 十二、度量衡器、計量器販賣許可
- 十三、度量衡器、計量器、自治團束認可
- 十四、中央都賣市場の仲買人許可
- 十五、公用日用品市場内の店舗其他施設物變更許可
- 十六、農業協同組合登録
- 十七、有毒性農藥販賣許可
- 十八、林野開墾許可外이에따른保安林解除
- 十九、土石採取許可
- 二十、牛乳處理場設置許可
- 二十一、傳染病死家畜の燒却王々埋却
- 二十二、種畜幹旋
- 二十三、地價證券發給
- 二十四、認許農地保留

- 二十五、農地代價一時償還申請處理
- 二十六、土地改良事業補助金交付規程算
- 二十七、管理權喪失市內運搬里程策定
- 二十八、既定計劃에依한土地異建物の買賣又支障物移轉
  - 補償
- 二十九、自動車交通事業計劃中運動系統變更認可
- 三十、自動車交通事業法違反者の運行停止處分
- 三十一、自動車交通事業の休止又廢止許可
- 三十二、建坪百坪未滿階數三以下の建築又使用許可
- 三十三、延建坪五十坪未滿の假建築又使用許可
- 三十四、疎開地替費地繼續貸付許可
- 三十五、風致地區内行爲許可 但建築行爲を除く外한다
- 三十六、河川道路敷地繼續占用許可
- 三十七 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에依한諸願届の處理外地籍整理
- 三十八、屋外給水特別裝置許可
- 三十九、財團法人設立許可申請進達
- 四十、財團法人任員改選認可申請進達
- 四十一、飲食物製造營業許可

四十二、國定處方書에 의한 醫藥品製造業 登錄申請 進達  
四十三、國定處方書以外의 醫藥品、醫療用具 衛生材料 및

化粧品製造許可申請 進達

四十四、藥師가 아닌 者의 營業許可

四十五、麻藥業者의 申請 進達

四十六、麻藥界限外 麻藥製造製劑 및 小分許可申請 進達

四十七、麻藥取扱者의 免許更新許可

四十八、麻藥取扱者의 免許登錄事項變更申請 進達

四十九、軍警年金證書發給

五十、軍事援護法施行令第十八條의 五에 依한 承認

五十一、軍事援護法第三十四條의 二에 依한 告發

五十二、軍事援護法施行令第二十九條에 依한 告發

五十三、射倖行爲許可

第五條 各局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定例로 輕易한 事項에 關한 調査、報告、通牒、公告、

公示、照覆과 督促

二、既定豫算의 區、洞、事業所에 對한 豫算配付

三、使用料과 手数料의 測定

四、補助金의 交付金의 請求

五、既定計劃에 依한 物資配定

六、訴願狀 補正 提出

七、所有權 轉移 登記

八、所屬特別會計 支辨 雇傭員의 任免

九、所屬分任 出納公務員의 任免

十、所屬課長의 管内 出張命令 早退 및 外出許可

第六條 內務局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廳中令 達

二、人事發令 通知

三、輕易한 實賜物件의 交付

四、四級國家公務員과 三級地方公務員以下의 管外 出張命

令

五、出納公務員의 任免

六、區課定員配定

七、洞事務所 位置 告示

八、徵集、召集 및 兵役 忌避者 告發

九、歲出豫算 目節 流用

十、三十萬圓以下의 豫備費 支出

十一、洞別 洞署 記定員配定 承認

第七條 財務局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 一、工事都給、物件賃貸、勞力供給、運搬及物件賃貸借契約
- 二、確定有價務의 支出決議
- 三、電話架設
- 四、市所屬自動車配置
- 五、都給工事의 中止及解除命令
- 六、確定及未確定債權讓渡承認
- 七、量約期限延期承認
- 八、雇傭員의 任免及賞罰
- 九、廳中團束
- 十、戶別稅二十八等以下의 再異議申請處理
- 十一、公用地域第二種土地收得稅免稅申請
- 十二、不動產時價鑑定依頼
- 十三、市有財產優先買收權付與
- 十四、市有財產繼續貸付及使用承認
- 十五、借入財產의 更新契約
- 十六、一件當百萬圓未滿의 土地及建物의 賣買
- 十七、不用資材處分

第八條 產業局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 一、度量衡器、計量器製作及修理許可申請進達
- 二、外資貸借者認定
- 三、生産工場施設保有認定
- 四、中央都賣市場仲買代理人設定承認及施設物使用指定
- 五、中央都賣市場의 指定以外의 物品取扱及歩戻金支出承認
- 六、肥料의 製造輸入及買賣免許業者의 申告處理
- 七、農藥輸入、製造許可申請進達
- 八、農藥販賣業申告處理
- 九、採種番、採種田經營
- 十、屠殺禁止及制限에 對한 例外屠殺許可
- 十一、獸醫師免許申請進達
- 十二、家畜飼料需給
- 十三、家畜病院申告處理
- 十四、地價證券名儀變更
- 十五、償還數收納
- 十六、分配農地의 地籍整理
- 十七、農地代價償還額減免申請의 具申

- 十八、管理糧穀倉庫指定 및 等級査定
  - 十九、管理糧穀都給契約에 따르는 低當權設定 및 抹消
  - 二十、管理糧穀加工原料의 配定 및 精算
  - 二十一、管理糧穀加工製品包裝配定
  - 二十二、管理糧穀發送日報處理
  - 二十三、石炭配定
- 第九條 建設局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 一、都給工事中의 中止解除決定
  - 二、工事施行에 따르는 支障電柱、瓦斯管 및 電信電話線의 移轉手續
  - 三、既定計劃에 의한 用地買收手續
  - 四、都給工事中의 既成部分再竣功의 檢査
  - 五、五〇坪未滿의 疎開地、替費地繼續貸付許可
  - 六、空開地 및 公園用地繼續貸付許可
  - 七、關係者協議出願에 의한 用地豫定指定、變更生之 誤謬 是因更正處理
  - 八、土地區劃整理에 의한 土地分割申告處理
  - 九、自動車交通事業計劃中車輛用途、車輛構造、車輛使用主、事務所、運行時間、停留所 및 營業所變更認可

- 十、自動車交通事業開始認可
  - 十一、私道築造許可
  - 十二、建坪七十坪階數三以下の 建築 및 使用許可
  - 十三、建築代書業許可
  - 十四、建設法에 의한 各種申告 및 報告의 處理
  - 十五、道路掘鑿許可
  - 十六、街路樹剪枝承認
  - 十七、既設排水管의 密附採納
  - 十八、屋內給水特別裝置許可
  - 十九、代用線(給水管)工事許可
  - 二十、制水兼設置承認
- 第十條 社會局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 一、公益典當鋪流質物賣却處分
  - 二、勤勞基準法에 의한 各種認可 및 各種申請、申告進達
  - 三、軍警年金受取權利의 消滅 및 停止에 따르는 次順位者의 年金證書發給
  - 四、改名、紛失其他原因에 因한 軍警年金證書의 再交付
  - 五、軍警年金受取權利者管外住所變更屈處理
  - 六、軍事保護法에 의한 諸申告處理

七、建設住宅分讓價還金測定

八、迷兒、孤兒、棄兒、浮浪兒、養老者及不具者收容

九、緊急救護

十、各種衛生關係營業業態の等級査定

十一、既定計劃에 依한防疫實施

十二、醫傷者設置許可申請進達

十三、醫療業者開設申告證發給

十四、醫療業者免許申請進達

十五、醫療業者國家試驗願進達

十六、藥局開設登錄發給

十七、飲食物製造許可에 對한名儀變更 및 場所移轉許可

十八、衛生上有害飲食物品의 廢棄

十九、同甘味質使用許可申請進達

二十、檢診區域指定

二十一、傳染病豫防措置 및 醫療業者動員

第十一條 警察局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警査 또는 消防士 以下の任免

二、警衛 또는 消防士 以下の異動配置

三、警察公報發刊

四、殉職傷殘警察官 및 消防官補償

五、火藥類取扱免許試驗

六、原動力團束

七、引火質物貯藏團束

八、自動車登錄及同使用上變更登錄

九、自動車運轉免許

十、車輛檢査

十一、防空警報通信

十二、民防空指導訓練

十三、警察通信、警備電話設置、廣止、移轉

第十二條 各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所屬職員의事務分掌

二、所屬職員의管内出張 및 時間外勤務命令

三、所屬職員의早退 및 外出許可

四、主管事項에 對한關係者召喚 및 書類提出要求

五、配給物資傳票發行

六、輕易한事項의通知、督促 및 照覆

七、定例報告處理

八、所屬金品出納命令

九、各種公務閱覽圖의處理

十、各種證書의再交付 또는更新交付

十一、刊行物配付

十二、行政事務處理循行令에依한延期通知

十三、設計範圍內의職工 및 夫人雇傭

十四、工事差工命令及監督

第十三條 總務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當直勤務命令

二、當直勤務狀況報告處理

第十四條 人事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公務員證 및 公務員에對한諸證明發行

二、課長以外職員의休暇願屆處理

三、公務員의任用手續에따르는照會

第十五條 市政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孤兒에對한後見人指定

二、洞職員人事異動事項處理

三、外國人滯留期間延長許可

四、戶籍寄留의諸證明件數報告處理

五、行政區域名稱變更證明

六、兵事に關한證明及通報

第十六條 司計課長은豫算戻入에關한事項專決한다

第十七條 公報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印刷所登錄

二、서울신문, 서울市報發刊

三、市勢一覽資料蒐集

第十八條 會計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一件當豫定價格百萬圓未滿의工事都給契約

二、一件當豫定價格二十五萬圓未滿의物件賣買勞力의供給及運搬契約

三、確定된債務一件當五十萬圓未滿의支出決議

四、職員報酬의支給決議

五、竣工保證金及稅保證金의出納決議

六、物品出納命令

七、市外電話使用

八、雇傭員採用의身元調査及服務

第十九條 稅務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課稅資料調査

二、滯納處分에依한差押 및 公賣通知의登記囑託

三、過誤納整理

四、滯納處分에 依한 差押解除通知

第二十條 管財課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登記簿謄本 閱覽申請

二、土地登帳謄本 交付申請

三、地籍圖林野圖 交付申請

第二十一條 商工課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度量衡器 修履檢査 및 證明

二、生産工場 登錄 및 證明

第二十二條 農林課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販賣肥料 見本 提出 要求

二、既定計劃에 依한 家畜防疫 實施

三、家畜傳染病 發生 措置

第二十三條 柴種課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管理種數引受 渡 指令

第二十四條 管理種數入出庫日 報處理

三、管理種數 保管 諸作業의 確認

四、管理種數 發給 指示

五、管理種數 發送 報告 및 確認

六、管理種數 代金 納付 告知

七、管理種數 副産物 賣渡 通知 및 引受 渡 指令

第二十四條 管理課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都給業者 出入 證明

二、自動車 交通 事業者의 諸般 報告 및 屆書 處理

三、營業用 自動車 運行 證 發給

第二十五條 土木課長은 所屬 場生 産品 供給에 關한 事項을 專決한다

決한다

第二十六條 都市計劃課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都市計劃 事業으로 因한 移轉 處理

二、道路、溝渠 및 建築線의 境界 明示 및 換地 豫定 地 指示 測量

三、換地 豫定 地區內 從前 土地 分割

四、建築許可 延期

五、建築許可에 關한 證明

第二十七條 水道課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五十 耗以上 給水 工事 許可

二、水道 工事을 爲한 小地區內 一時 給水 停止

三、私設 消防 栓 演習 使用



四、量水器의異常正는給水用具의故障其他로因한水量認  
定

第二十八條 社會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軍警年金受取權利者管内住 變更屆處理

二、軍警年金受取權利者改印申告處理

三、戰死者確認依頼

四、軍警年金支給該當者確認依頼

五、戰死者賜金支給通報

第二十九條 婦女課長은救護를要하는婦女子收容에關한事  
項을專決한다

第三十條 醫藥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醫藥購入 및販賣者發付

二、醫師、齒科醫師의專門科目標榜 및許可申請進達

三、醫採業 및醫類似業廢業申告處理

四、醫採業者醫籍抹消進達

五、要救護患者取扱

第三十一條 衛生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浮浪癩患者摘發移送

二、第一種傳染病發生措施

三、傳染病患者屍體埋葬許可

第三十二條 警務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局內警察官의常直勤務命令

二、雇傭員의任免

三、巡警級の配置

四、警察職員採用에따르는身分照會

五、殉職傷殘警察官遺家族證明發給

六、警查以下職員의出張命令

七、警察官教養方法及教養時間의配定

第三十三條 保安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廣告物貼付 및揭示의承認

二、原動機繼續檢査

三、高擡車配車

四、輕微한保安情報

五、行政手配

第三十四條 交通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自動車繼續檢査

二、自動車檢査證再交付 및記載事項變更申請과返納處理

三、車輛在籍證明

四、自動車運轉免許の更新を再交付

五、就業免許證交付證更新

六、違反車輛行政處分(再審除外)

七、車輛廢車證明

八、自動車使用主變更屆處理

九、自動車未登録殘餘證明

十、自動車構造變更屆處理

十一、輕微社交通事故處理

十二、自動車運轉免許行政處分(再審除外)

第三十五條 警備隊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防空施設의指導

二、騎馬警察官의動員

三、消防職員의身分照會

四、消防職員 및 義勇消防隊員身分證明書發給

五、消防車輛整備

六、防火施設의指導

七、消防通信施設整備

八、警察銃器彈藥保管配置

第三十六條 搜查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輕微社搜查情報處理

二、該般犯罪手配及解除

三、輕微社犯罪報告

四、前科者 및 刑事要犯人動向調査

五、指紋、寫眞 및 證據品鑑識

六、輕微社犯罪事件送致 및 移讓

七、拘束通知書

八、證據蒐集을爲한該般照會

第三十七條 查察隊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輕微社查察情報處理

二、輕微社犯罪事件送致 및 移讓

三、前科者要犯察人動向調査

四、輕微社查察犯罪의搜查 및 手配解除

五、輕微社集會願屆處理

六、輕微社身元調査 및 照會

第三十八條 通信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警備通信資材出納保管

二、交換員敎養

三、輕易社局內有無線通信施設

附 則

本規程은 懷紀四二九二年十月一日부터 施行한다  
懷紀四二八九年八月二十五日 字 서울特別市訓令第五〇號는  
이를 廢止한다

규 칙

서울特別市國勢調査委員會規則을 制定하여 이을 公布한다

懷紀四二九二年九月二十五日

서울特別市長 任 興 淳

● 서울特別市規則第一六六號

서울特別市國勢調査委員會規則

第一條 (目的) 1、懷紀四二九三年度에 實施하는 人口

住宅 및 農業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에 서울特別市國勢調査委員會(以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委員會는 前項의 目的의 以外에 서울特別市統計의 改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建議할 수 있다

第二條 (委員會의 構成) 1、委員會는 委員長一人 副

委員長一人 常任委員五人 委員五人以內로서 組織한다

2、委員長은 市長 副委員長은 副市長이 된다

3、常任委員은 內務局長이 된다

4、委員은 財務、産業、建設、社會、警察局長이 된다

第三條 (委員長의 職務) 1、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2、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理한다

3、委員長 및 委員長이 同時에 有故時는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四條 (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의 事項을 管掌한다

1、人口住宅 및 農業에 對한 調査의 實行計劃에 關한 事項

2、人口住宅 및 農業에 對한 調査의 實施調査에 關한 事項

3、서울特別市統計의 改善에 關한 意見과 建議에 關한 事項

4、其他委員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

第五條 (顧問) 1、委員會에 顧問若干人을 둘 수 있다

2、前項의 顧問은 統計에 關한 豫試 또는 經驗이 豐富한 者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3、顧問은 委員會의 諮問에 應한다

第一條 (委員會會議召集及議決) 1、委員會會議은 委員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前項의 會議은 委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3、委員長은 表決權을 갖으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갖는다

4、幹事는 委員會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七條 (資料提出要求) 委員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關係機關에 要求할 수 있다

第八條 (幹事書記) 1、委員會에 幹事三人과 書記若干人을 둔다

2、幹事 및 書記은 人口住宅 및 農業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는 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이 命한다

3、幹事 및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會務에 從事한다

第九條 (會議錄作成) 委員會는 會議을 開議하였을 때에 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附 則

本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국방운영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은 이예공포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一八일

서울특별시장 임 훈 순

●서울특별시규칙제一六七호

서울특별시 국민방운영위원회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二조 본문제一항중「十五名以内」를 「二十名以内」로 하

고 동조 본문제三항중「五名」을 「七名」으로 한다

제三조 제二항중 「警察署長이 된다」를 「委員이互選한다」로 한다

다」로 한다

제五조 제二항중 「內務局長」다음에 「과委員長이 委囑한다

委員」을 삽입한다

부 칙

이규칙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국민반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공포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一八일

서울특별시장 임흥순

●서울특별시규칙제一六八호

서울특별시 국민반운영규칙을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六조 제二항중 「班員의過半數의贊成을얻어」를 삭제한다

제七조 제二항중 「關係班長의過半數의贊成을얻어」를 삭제한다

부칙

이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公佈文

서울특별시市民證發給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公佈하다

續紀四二九二년九月三十日

서울특별시市長 任興淳

서울特別市規則 第一六九號(改正案)

서울特別市市民證發給規則中 다음과같이改正한다

第五條第一項中 市民證發給申請書(第五號書式)를 別表

(一)과같이하고 同條第二項을 削除한다

第六條中 「受理由書」를 削除한다

第七條中 移轉을申告(第五號書式)를 別表(二)와같이한다

附則

本規則은 續紀四二九二年十月一日부터 施行한다

別表(一)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月 日	
班長		班長		洞長		區分		市香	
<p>서울特別市市民證發給申請書</p> <p>本籍 現住所 서울特別市 區洞街番地號統班 前住所 戶主 또는 世帶主 姓名 同上關係</p> <p>職業 職業名 職業位 職業住所 姓名</p> <p>生年月日 續紀四二九二 年 月 日生(滿歲) 居住年月日 性別</p> <p>政黨 또는 社會團體關係 右記載事項에 相違가 없어야 하니 서울特別市市民證을 發給하여 주심을 玆에 申請하나이 다</p> <p>續紀四二九二 年 月 日 申請者姓名 貴下</p> <p>서울特別市長 貴下</p>									

市民證發給責任者職姓名  
所轄署長警察官職姓名

理由書

檢紀四二九二年 月 日  
右

右記事實可相違無甘耳 其身元可確實可又 過去未來  
普通可 不正事實可 發見又否 係起可之普通可  
本人等可 連帶責任を負甘可也 茲兩連帶責任保證甘  
本籍地

現住所 서울特別市 區 洞 街 番 號 統 洞 班

職 業 姓 名 ④

市民證 號 檢紀四二九二年 月 日生

本籍地

現住所 서울特別市 區 洞 街 番 號 統 洞 班

職 業 姓 名 ④

市民證 號 檢紀四二九二年 月 日生

保 證 人

移 轉 屆

本籍地

現住所

前住所

(發給當時)

姓名

性別

檢紀四二九二年 月 日生

一、移轉年月日

一、移轉事由

右斗如引移轉可也 茲以屬出甘

檢紀四二九二年 月 日

右屬出人

警察署長

現住所地
領由印
派用所
洞 長
號 長
番 長

④

# 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一六四조  
 서울특별시의회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조례문 이에공  
 포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十六日

서울특별시장 임 흥 순

서울특별시의회원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二조제一항중 「捰千五百圓」을 「捰千五百圓」으로한다  
 본조례는 단기四二九二년十月五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원비용변상조례  
 원행 개정  
 대조표

원 행 개 정

제二조제一항  
 의원이의회또는 위원회에  
 출석할경우에는 임비「捰  
 千五百圓」을 지급한다

제二조제一항  
 의원이의회또는 위원회에  
 출석할경우에는 임비「捰  
 千五百圓」을 지급한다

# 훈령

●서울특별시훈령제七七호

내 무 국  
 재 무 국  
 산 업 국  
 건 실 국  
 사 회 국  
 구 국

서울특별시 五급국가공무원 및 四급지방공무원 채용시  
 령규정을 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十一日

서울특별시장 임 흥 순

서울특별시 五급국가공무원 및 四급지방공무원  
 용시원규정

제一조 국가공무원법제十六조와 지방공무원법제三十조  
 제三조의 규정예외한 공무원의임용은 본규정의정하

은바에 의하여 제용시험(이하시험이라한다)에 합격한 자라야한다 단 다음각조의 一에 해당하지는 않는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임용할수있다

一, 초급이하이상 또는 동등이상외 학교종출입간자  
二,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에 제직간자로서 해면전지  
三, 연이내에 다시임용하고자할때

제二조 시험은필요에따라 수시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단사무형전에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위촉하여 행할수있다

제三조 시험은 임용하고자하는 직무에필요한 학식과 그응용능력의 유무를고사한다

제四조 ①시험은 필기고사와구술고사로 나누어행한다 단 면의필요하는 기술계공무원에대하여는 구술고사만을행한다

② 필기고사는 「논문」 「과목외에 사무계공무원은 「법제대의」 「과목 기술계공무원은 「당해기술에관한어」 「과목으로한다

③ 구술고사는 상식과인물예의한다  
제五조 필기고사합격자가아니면 구술고사를 받을수없

다

제六조 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다음서울통가주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응시원서 二통(별지제一호서식)

이력서 二통(별지제二호서식)

자 진 二매 (최근三개월이내에 받은영한달도상반신영합영)

제七조 본규정의외에 필요한사항은 공무원전형의에 의한다

부 칙

본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四二九二년二月二일 훈령제二二三호(서울특별시五급 국가공무원과 四급지방공무원 임용규정)은 이를폐지한다

별지제一호서식(가보)자二호 제호八호五부)

五급국가공무원 응시원서 사무계  
四급지방공무원 응시원서 기술계

본 칙  
원구소

성 명



생년월일

(당 세)

본인이 귀사에서 시행하는 서기, 지방서기 기원, 지방기원) 채용시점에 동

시하고자 이력서 2종과 사진 2매를 첨부 제출하는 동시에

시후 이력 또는 신분증 부정이 발견될 때에는 여하한 처분에도

이외가 없음을 서약하고 이에 출원하여야 함

단기 四二九 년 월 일

출원자 (성 명) ㉞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 二호서식 (가브 一자 二촌 세묘 八촌 五부)

이 력 서

본 적

월 주 소

호주(성명)의 (관계)

성 명 (주 혼)

단기 년 월 일 생

학 력

一, 단기 년 월 일, 하 학고입학

二, 단기 년 월 일, 하 학고입 및 졸업

경 력

一, 단기 년 월 일(하하)에서(하하)직에 종사함

一, 단기 년 월 일(하하)관청에서(하하)직에 종사함

상 별

一, 단기 년 월 일(하하)에서 하하일도(하하)상을 받음

우기와 같이 불렀음을

단기 四二九 년 월 일

우(성 명) 인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三七四호

삼림명제 三호 및 동명시행규칙 제 九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

안림을 다음과 같이 해제한다

단기 四二九 二년 九월 五일

서울특별시장 임 홍 순

계	성북	구	소계	계	성북	구	소계
	우이	동	보안림		우이	동	보안림
	동치산	종류	거		동치산	종류	거
	八三		번		八三		번
	입야		지목		입야		지목
	六 <sup>정</sup>		보안림면적		六 <sup>정</sup>		보안림면적
	六一六〇〇		해제면적		六一六〇〇		해제면적
	二七〇〇		소유별		二七〇〇		소유별
	사유		소유자		사유		소유자
	정정진		해제사유		정정진		해제사유
	계		비		계		비
	년		고		년		고

●서울특별시고시제三七五호

삼림영제三조및 동영시행규칙제九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같이해제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五일

서울특별시장 임 홍 순

계	성북	구	소계	계	성북	구	소계
	정릉	동	보안림		정릉	동	보안림
	동치산	종류	거		동치산	종류	거
	五三		번		五三		번
	입야		지목		입야		지목
	二 <sup>정</sup>		보안림면적		二 <sup>정</sup>		보안림면적
	一七〇〇		해제면적		一七〇〇		해제면적
	一七〇〇		소유별		一七〇〇		소유별
	사유		소유자		사유		소유자
	박도석		해제사유		박도석		해제사유
	계		비		계		비
	간		고		간		고

●서울특별시고시제三七六호

삼림영제三조및 동영시행규칙제九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같이해제한다

단기 四二九二년 九월 五일

서울특별시장 임 훈 순

계	구	소	중	보안림	지	번	지목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소유별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계											
		성북	문암	풍치산	二의	一	임야	三三〇〇	〇一〇一	귀속임		기간	
								三三〇〇	三三〇〇				

●서울특별시고시 제三七七호

삼림법 제 三 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九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 같이 해제한다

단기 四二九二년 九월 十일

서울특별시장 임 훈 순

계	구	소	중	보안림	지	번	지목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소유별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계											
		종대문	외기	풍치	산	六	임야	三六〇〇	〇一三三	구황실 소관		기간	
								三六〇〇	〇一三三				



지			一二九〇〇		〇四二六				
---	--	--	-------	--	------	--	--	--	--

●서울특별시고시제三八〇호

삼림법제三조 및 동법시행규칙제九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같이 해제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十日

기

서울특별시장 임 훈 순

구	지	종보안림	지번	지목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소유별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동대문	보문	풍치산	—	임야	정 三三〇〇	정 〇二〇三	사유	김한규	개간	
지					三三〇〇	〇二〇三				

●서울특별시고시제三八二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란동사무소위원회 다음과같이 변경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十六日

기

서울특별시장 임 훈 순

변경위치 마포구 용강동 二二六번지

●서울특별시고시제三八三호

삼림영제三조및 동영시행규칙제九조의 규정에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같이 해제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十二日

서울특별시장 임 훈 순

기

계	소계	보안림	지번	지목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소유별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구분	종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종류	이름	구분	
성북	성북	종	산	임야	一〇三,四五〇.〇〇	〇六二.〇〇	국유림		계	간
					一〇三,四五〇.〇〇	〇六二.〇〇				

●서울특별시고시제三八四호

삼림영제三조및 동영시행규칙제九조의 규정에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같이 해제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十二日

서울특별시장 임 훈 순

기

계	소계	보안림	지번	지목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소유별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구분	종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종류	이름	구분	
영등포	영등포	종	산	임야	二五五.〇〇	六九.〇〇	국유림		계	간
					二五五.〇〇	六九.〇〇				

●서울특별시코시제三八五호  
 삼일명제三조 및 동명시행규칙 제九조의규정에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같이 해제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十二일

기

소	구	지	보안림	지	면	지목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소유별	소유자	해제사유	비	고
	종	류											
성	동	광	동	종	치	산	五七	임야	정	二六			
지				산	八八의一				정	三四			
				二	권	지				六〇〇			
										三〇四〇			

서울특별시장 임 종 순

●서울특별시코시제三八六호  
 삼일명제三조 및 동명시행규칙제九조의 규정에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같이 해제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十二일

기

소	구	지	보안림	지	면	지목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소유별	소유자	해제사유	비	고
	종	류											
동	대	분	회	기	종	치	산	一의一	임야	정	一〇六		

서울특별시장 임 종 순

●서울특별시 고시 제 三八七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정동 一가 二四번지내지 동(同)二四九번지내지에 딸린 중간관리청도로의 일부를 도로명제 十四조 및 동명시행규칙 제 十八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지한다  
우 폐지에 대한 도면은 당시 건설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 공람에 공한다

단기 四二九二년 九월 二二일

서울특별시장 임 홍 순

●서울특별시 고시 제 三八八호

삼림명제 三조 및 동명시행규칙 제 九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 같이 해제한다

단기 四二九二년 九월 二四일

서울특별시장 임 홍 순

기

구	소	보안림	지	지	보안면적	해제면적	소유별	소유자	해제사유	비	고
동	계	종류	번	목	적	적					
신복					정	정					
돈암					二三〇〇	〇五二六	귀속임				
풍치					二三〇〇						
산 一의 一											
임야											
계					二三〇〇	〇五二六					



●서울특별시고시제三九〇호

삼립명제三조 및 동명시행규칙 제九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 같이 해제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九일

서울특별시장 임 훈 순

기

구	소재지	보안림종류	지번	지목	면적	소유별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상북	미아	푸치림	삼三五의一	임야	一七 <sup>정</sup> 五〇〇〇	사유	중흥학원	개간	
"	"	"	삼三五의三	"	二一〇〇	"	"	"	
"	"	"	삼三五의四	"	二八一〇〇	"	"	"	
계					一九五二〇〇		五五二〇〇		

●서울특별시고시제三九一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래동四가四七 및 문래동二가五三내지 五五번지대지에엽한 중간관리청도로의 일부를 도로명제十四조 및 동명시행규칙제十八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지한다

우도르페지에대한도면은 당시건설국도시계획과에비치하고 일반의종람에공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九日

서울특별시장 임 훈 순

●서울특별시 도시제 三九二호

시가지 계획명제 二十七조와 동명시행규칙제 四十四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좌기와 같이 지정한다

단기 四二九二년 九월 三十일

서울특별시장 임 총 순

기

지	정	장	소	간	격	인	장	격	요
서울특별시 도시제 三九二호의 八				三	M	二六	M		

우관제도면은 건설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종람함

●서울특별시 제 三九三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정동 一가 一四번지내지 一七번지 및 一九번지내지에 접한 중간관리정도토의 일부를 도로명제 十四조 및 동명시행규칙제 十八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지한다

우도로폐지에 대한도면은 당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의 종람에 응고한다

단기 四二九二년 九월 三十일

서울특별시장 임 총 순

# 공 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공고제 3호

단기 4292년 9월 29일 시행 계 5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고시

필기 고시 합격자 및 구술 고시 시행일 정을 다음과 같이 정함

다

단기 4292년 9월 31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 홍 순

一, 필기 고시 합격자

번호	성명	점수	성명	점수
一四	李 培	四〇	文 正	三三
二一	金 允	四一	朴 順	四一
二四	卞 復	四六	金 逸	四七
二七	吳 聖	四七	朴 金	五一
三〇	林 炳	五一	宋 壽	

二, 구술 고시

3. 장 소	2. 일 시	1. 응시 자격	필기 고시 합격자에 한함
서울특별시내 무국장실	추후 별도 통지함		

  

一八五	徐 廷	五二	崔 相	運
一五〇	李 圭	五一〇	金 容	宰
一四八	金 基	五〇八	金 琿	麟
一四七	李 奇	四三七	金 政	治
一四六	趙 晴	三九四	李 海	龍
一三五	柳 志	三二六	尹 鍾	惠
一三三	元 永	三一九	李 貴	夏
一三一	林 在	二八一	金 允	晟
一〇二	李 用	二七八	曹 圭	正
九七	申 東	二六八	金 眞	澤
九一	李 潤	二三四	金 大	浩
八二	李 泰	二二二	朴 廷	烈
七九	金 祺	二〇七	姜 德	淳
五四	金 聖			

不動産賣却入札公告

○서울特別市公告第二七七號

今般 市有財産の一部を 左記に依하여 賣却한다

權紀四二九二年九月七日

서울特別市長 任 興 淳

記

一、入札公告番號 및 (財産目錄과 같은) 財産의 表示

二、入札 日 時 權紀四二九二年九月十八日午前十時

三、入札 및 開札 場所 서울特別市財務局 管財課

四、財産 從 覽 管財課에 財産目錄을 揭示하여 從 覽에 供함

五、入札 方法 一般競争入札로 하되 左記目錄財産

中 適法으로 貸付를 받은 者 및 社

會政策上 市가集團移任承認을 한

者에 對하여는 優先買收權을 認定함

六、入札 保證金 入札金額의 一割以上의 現金 또는

市中金融機關의 保證手票와 入札

七、優先買收願 및 入札者 登錄

保證金の 五分以上의 國債消化事 證을 入札前에 納付함

優先買收願 및 入札登錄申請書은 權紀四二九二年 九月一四日午後三時

까지 當市財務局 管財課에 提出함

但 優先買收權者는 別途認定을 받

아야 한다

八、賣却契約 및 代金 納付 方法

落札者는 入札日로부터 五日以內에

二割以上에 該當하는 契約金額을 納

付와 同時에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殘金은 契約日로부터 三十日以內에

納付함

九、地上物의 撤去

賣却後 地上物의 撤去 補償明渡에

關하여는 買收者가 一切責任을 진다

一〇、其他 事項

優先買收權者가 入札에 參加하지

아니한 때에는 優先買收權을 拋棄

한 것으로 看做함

본하계산목록(제10회)

번호	소재지	면적	평가액	사정가액	유량번호	비고
六二四	龍山漢市	66BL 畝山一三〇三	一〇五·三三			再公告 個人建物있음
六二三	龍山漢市	77BL 畝山二四〇	二八二·五〇			
六二二	龍山漢市	51BL 畝山四一六三	二〇〇·九四			
六二一	龍山漢市	67BL 畝山二二三	二二六·〇〇			再公告 個人建物있음
六二〇	麻浦阿峴	五八三	二七·〇〇	②③ 一四·〇〇		
六一九	西大門弘濟	二四四 二四三 二四二 二四一	一七三六·〇〇	一一五·〇〇		再公告 市有建物 個人 入住中
六一八	城東聖水	三八七	一七八·〇〇			空地임
六一七	城東聖水	山三一〇一 (一七七)	一〇八·〇〇		一一二	
六一六	城北教岩	山三一〇一	三七六·〇〇		八七	
六一五	城北教岩	山三一〇一	九一·四〇		七	再公告 個人建物있음
一四	城北教岩	山三一〇一	九八·三〇		六	再公告 個人建物있음

四二五五



六四四	麻浦河製	山三의三四	莖	四二〇〇〇	一	一七까지
六四五		山三의二七	墳	六五五〇〇	一	
六四六				一一一五〇〇	一	個人遺生 및 一部空地 있음
六四七	龍山裏南	山一의五三		一八二・六七	一	個人建物 있음
六四八		山一의三六		一九九・〇〇	一	
六四九	南營	二七의二八	堡	二四六・九〇	一	舊公設市場 現市場 있음
				一七三・九〇	一	

不動産賣却入札公告

서울特別市公告第二七八號

今般 市有財産의 一部를 左記에 依하여 賣却한다

權紀四二九二年九月十九日

서울特別市長 任 興 淳

記

一、入札公告番號 및 財産目錄과 같음

二、入札 日 時 權紀四二九二年九月三十日午前十時

三、入札 및 開札場所 서울特別市財務局 管財課

四、財産 從 覽 管財課에 財産目錄을 揭示하여 從

覽에 告함

五、入札 方法 一般競争入札로 하되 左記目錄財産 中 適法으로 貸付를 받은 者 및 社會政策上 市가 集團移住承認을 한 者에 對하여는 優先買收權을 認定 함

六、入札 保證金 入札金額의 一割以上의 現金 또는 市中 金融機關의 保證手票外 入札保證金 五分以上의 國債消化專證書를 入札前에 納付함

七、優先買收願 및 入札者登錄

優先買收願 및 入札登錄申請書受理  
 紀四二九二年九月二十五日午後三時까  
 지 當市財務局管財課에 提出함 但  
 優先買收議者는 別途認定을 받아  
 야한다

九、地上物의 撤去

殘金은 契約日로부터 三十日以内  
 에 納付함  
 賣却後地上物의 撤去補償關渡에 關  
 하여는 買收者가 一切責任진다

八、賣買契約 및 代金 納付方法

落札者는 入札日로부터 五日以内  
 에 二割以上에 該當하는 契約金을  
 納付와 同時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一〇、其他事項

優先買收者가 入札에 參加하지 아  
 니한 때에는 優先買收權을 拋棄한  
 것으로 看做함

불하 재산 목록 (제二十一회)

번호	소재지	면적	평가액	잔액	비고
六五〇	東大門 踏十里	二二五 坪	二七八.〇〇		個人建物 있음
六五一	城北 貞陵	一四〇의 一	五.〇〇		
六五二		一四〇의 二	一〇.〇〇		
六五三		一四〇의 三	一〇.〇〇		
六五四		一四〇의 六	二〇.〇〇		
六五五		一四〇의 九	三三.〇〇		
六五六		一四一의 一	九八.〇〇		
六五七		一四一의 二	一〇〇.〇〇		
六五八		一四一의 三	三三.〇〇		



六五九 六六〇 六六一 六六二 六六三 六六四 六六五 六六六 六六七 六六八 六六九 六七〇 六七一 六七二 六七三 六七四 六七五 六七六 六七七 六七八 六七九 六八〇 六八一 六八二

.....

.....

一四一의五 一四一의六 一五〇의九 一五〇의十二 一五〇의十五 一五〇의十六 一五〇의十九 一五〇의二〇 一五〇의二一 一五〇의二六 一五〇의二八 一五〇의二九 一五〇의三〇 一五〇의三一 一五〇의三二 一五〇의三三 一五〇의三五 一五〇의三八 一五〇의四〇 一五〇의四四 一五〇의四七 一五〇의五〇 三〇七의三

.....

一一二〇〇 一七〇〇〇 九〇〇〇 一四〇〇〇 三二〇〇〇 二二〇〇〇 二〇〇〇〇 一二〇〇〇 八〇〇〇 四六〇〇〇 一一〇〇〇 二七〇〇〇 二四〇〇〇 五三〇〇〇 二六〇〇〇 五〇〇〇〇 二四〇〇〇 三七〇〇〇 四六〇〇〇 二七〇〇〇 二七〇〇〇 五〇〇〇〇 一〇〇〇〇 二六〇〇〇

.....

.....

.....

.....

.....

四二五九

六八三  
六八四  
六八五  
六八六  
六八七  
六八八  
六八九  
六九〇  
六九一  
六九二  
六九三  
六九四  
六九五  
六九六  
六九七  
六九八  
六九九  
七〇〇  
七〇一  
七〇二  
七〇三  
七〇四  
七〇五  
七〇六  
七〇七

.....

城  
北

山

二〇

林

二五〇〇〇〇

八〇〇  
二〇三〇〇  
八〇〇  
二一〇〇  
四〇〇  
二一〇〇  
二八〇〇  
二二〇〇  
二七〇〇  
二一〇〇  
二〇〇〇  
三三〇〇  
四九〇〇  
二二〇〇  
二四〇〇  
三一〇〇  
三二〇〇  
四四〇〇  
三一〇〇  
一八〇〇  
二二〇〇  
一六〇〇  
二〇〇〇  
二一〇〇  
一一〇〇  
二〇〇〇

.....

.....

.....

.....

個人建物四棟以上

四二六〇

●서울특별시공고제二七九호

당시성북구미아동 제二공동모지(가족모지) 및 동지역내에 있는 사유지의 분모는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모지화장장애완화장취체규칙 제十六조 및 제二十조」에 의거 좌기와여히 이장키로결정하였으니 본지역내에 매장할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소정기간내에 이장할것을 공고한다 만약 이장기간내에 이장하지않는분모는 무연분묘로간주하고 당시에서계정한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三日

서울특별시장 임 총 순

七〇八	西大門 台東	一四九의四番	二〇一〇〇	空地
七〇九	西小門	二二〇의三番	三五〇〇〇	個人建物있음
七一〇	永登浦 永登浦	一四	一八三・九〇	再公告 個人建物있음
七一一	水洞	九의一〇	五五〇〇〇	個人建物있음
七一二		九의三〇	二九〇〇〇	
七一三		九一三〇〇	一一九〇〇	
七一四	麻浦 阿峴	川三의二七番	一一・一五・〇〇	個人建物및一部空地있음

기

- 一、모지의위치
- 1,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산六九의一, 산六九의二〇, 산六九의六, 산六九의五四, 산六九의九, 산七五이상사유지
  - 2, 서울특별시성북구미아동 산六九의一五, 산六九의三六, 산六九의三三, 산六九의五〇, 六산九의五, 산六九의五三, 산六九의四九, 산六九의五七, 산六九의二八, 산六九의一七, 산六九의四七, 산六九의三七, 산六九의三五, 산六九의三四, 산六九의一四, 산六九의五一, 산六九의三八, 산六九의三九, 산六九의三六,

삼六九의三、삼六九의二、삼六九、삼六七의四〇、삼六九의一〇、삼六九의四一、삼六九의四二、삼六九의四三、삼六九의四四、삼六九의二七、답六三四、삼六九의六二、삼六九의六一、이상사유지

二、명 칭

서울특별시립미아리 제二공동모지(가족모지)

三、이 장 기 간  
자단기四二九二년九월一九일  
지단기四二九三년三월一九일

반 통 문

九월 달에 할 일

- 一、九·二八을 상기하자
- 二、시행정은 시민의손으로 이웃끼리 서로서로 의중계산자
- 三、과리를 잡자
- 四、내집앞은 내가 쓸자
- 五、문단속을 잘하자

九월 달에 알아들일

- 一、시민증정인을 받으시다  
지 자 八월二一일  
九월二〇일
- 二、전기류계를 팔리십시오
- 三、수도가 고장났을때 「물」전화「一一七」번으로 연락하시오  
가정의 수도공사는 구청에서 싼값으로 직접취급하기로 했읍니다  
수도물을 아껴 씁시다
- 四、쓰레기차는 차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쓰레기들 자동차까지 가져가면 배치된인부가 올려실기로 했읍니다
- 五、본대의모양이 변경되지않는 건축에는 허가를 받을것없이 과출소에 구두로 신고만하기로 했읍니다
- 六、부정상포와 부정도망형기의 단속을 실시하고있읍니다
- 七、계를 놓아 기르지 맙시다

사령

발명일자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소속직종성명	지소장	지소장	지소장	지소장	지소장	지소장	지소장	지소장	지소장	지소장
이름	金鑿春	金鑿春	金鑿春	金鑿春	金鑿春	金鑿春	金鑿春	金鑿春	金鑿春	金鑿春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원외의하여그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四二六三

四二九二  
六二二

사무청형에이  
합하여그직용면  
병영등원  
의정  
韓英柱

의정에입합  
一급三호봉을  
급합  
영등포병원장  
에보합  
吳範泳

四二九二  
九二二

기정에입합  
三호봉을급합  
서울지방건설  
국세공사와  
장에보합  
건설국  
수도과장  
기과  
金煥麟

四二九二  
九一九

동대문구총무  
과장에보합  
부과과장  
지방참사  
康泰賢

성북구총무과  
장에보합  
순화병원  
사무과장  
지방참사  
金振鴻

서대문구총무  
과장에보합  
영등포  
사무과장  
지방참사  
李漢鼎

성동구총무과  
근무불명합  
서대문구  
건설과장  
지방기과  
李元宰

제무국세무과  
장에보합  
회계과장  
사무관  
崔良振

제무국회계과  
장에보합  
건설국  
관리과장  
사무관  
金成甲

건설국관리과  
장에보합  
내무국  
시정과장  
사무관  
金亨鎔

내무국인사과  
근무불명합  
산업국  
농림과장  
사무관  
安薰哲

산업국상공과  
장에보합  
시정과장  
사무관  
李盛雨

산업국시정과  
장에보합  
상공과장  
사무관  
羅相萬

산업국농림과  
장에보합  
내무국  
사계과장  
사무관  
李宗彦

내무국총무과  
장에보합  
내무국총  
무과근무  
사무관  
裴慶煥

내무국인사과  
장에보합  
내무국인  
사과근무  
사무관  
金大植

내무국시정과  
장에보합  
내무부지  
방국행정  
과근무  
사무관  
朴斗璠

내무부지방국  
행정과근무를  
명합  
내무국세  
무과근무  
사무관  
徐載元

내무국사계과  
장에보합  
내무부지  
방국지도  
과근무  
사무관  
全敬遇

건설국관리과  
근무불명합  
내무부통  
계국계포  
과근무  
사무관  
姜正熙

내무국시정과  
근무불명합  
서대문구  
총무과장  
사무관  
朴有緒



四二九二  
九二三

동대문구근무 명합	중 진설 과구	河倫植
성북구근무물 명합	성 대문 구	白承律
영등포구근무 명합	용 산 구	蔡燦植
마포구근무물 명합	중 진설 과구	吳鎮皓
성북구진설과 장에보합	용 산 구	金在熙
진설국도시계 획과구근무물 명합	진 설 과구	金鍾根
성동구진설과 장에보합	성 동 구	孫泳學
북도수원지사 무소장에보합	수 원 지 장	李泰華
	안 炳 國	

노량진수원지 사무소장에보 합	대 원 산 배 수 지 사 무 소 장 에 보 합	대원산배 수지사무 소장정왕 삼리원두 장사무소	李賢在
마포구진설과 장서리명합	성 동 구	진설과 기	李南熙
지방기과에임 합	지 방 기 과 에 임		徐商圭
서대문구진설 과장에보합	서 대 문 구 진 설 과 장 에 보 합		
사회국의약과 근무물명합	사 회 국 의 약 과	동부병원 약제과장	崔明植
동부병원약제 과장에보합	동 부 병 원 약 제 과 장		徐大錫
사회국의약과 구근무물명합	사 회 국 의 약 과		金鑑弼
종로구근무물 명합	종 로 구	지방주사	柳熙根
진설국근무물 명합	진 설 국	지방기과	李承喆



광 고

행여사망인발생공고

건설국군무를 명합  
건설국군무를 명합  
건설국군무를 명합  
성부구  
건설과장  
마포구  
건설과장

李道甲  
具完楨

一, 국 제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전 인 상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령 二 四 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一〇, 사망장소 新設洞三二五의二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七月三二일

一, 사 인 中 腦 壓 迫  
二, 가 매 장 지 신자리공동모지  
三, 가 매 장 지 신자리공동모지  
四, 취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제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남 자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령 三 〇 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一〇, 사망장소 한남동도선장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八月二일  
一二, 사 인 窒 息 死  
一三, 가 매 장 지 신자리공동모지  
一四, 취 급 처 용산구청

四二六七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본	상
三、주	소	본	상
四、성	명	본	상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二七	세
七、인	상	본	상
八、작	의	본	상
九、소	지	무	
一〇、자	망	장	소
一一、자	망	년	월
一二、사	가	매	장
一三、가	매	장	지
一四、취	급	처	

한·인도코下  
四二九二년七月三二일  
심사리공동모지  
용산구정

四、상	명	양	용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四二	세
七、인	상	본	상
八、작	의	본	상
九、소	지	무	
一〇、자	망	장	소
一一、자	망	년	월
一二、사	가	매	장
一三、가	매	장	지
一四、취	급	처	

자혜병원  
四二九二년八月三二일  
심사리공동모지  
용산구정

四二六八

一〇、자 망년월일	九、소 지	八、착 의	七、인 상	六、년 명	五、성 별	四、성 명	三、주 소	二、본 적	一、국 적	一四、취 급 처	一三、가 매 장 지	一二、사 인	一〇、자 망년월일	九、소 지	八、착 의	七、인 상	六、년 명	五、성 별	四、성 명	三、주 소	二、본 적	一、국 적													
四二九二년八월六일	자혜병원	무	불 상	불 상	남 자	조 계 복	불 상	불 상	한 국	용산구청	신사리공동묘지	익 자	四二九二년八월四일	이촌동二九六	무	불 상	불 상	남 자	조 계 복	불 상	불 상	한 국	용산구청	신사리공동묘지	익 자	四二九二년八월四일	이촌동二九六	무	불 상	불 상	남 자	조 계 복	불 상	불 상	한 국

一四、취 급 처	一三、가 매 장 지	一二、사 인	一〇、자 망년월일	九、소 지	八、착 의	七、인 상	六、년 명	五、성 별	四、성 명	三、주 소	二、본 적	一、국 적	一四、취 급 처	一三、가 매 장 지	一二、사 인	一〇、자 망년월일	九、소 지	八、착 의	七、인 상	六、년 명	五、성 별	四、성 명	三、주 소	二、본 적	一、국 적
용산구청	신사리공동묘지	익 자	四二九二년八월三일	한강인도교下水中	무	불 상	불 상	남 자	약三五세	불 상	불 상	한 국	용산구청	신사리공동묘지	익 자	四二九二년八월三일	한강인도교下水中	무	불 상	불 상	남 자	약三五세	불 상	불 상	한 국

四二六九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남	자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명	二九	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무	
一〇, 자	망	장	소
一一, 자	망	년	월
一二, 자	인	의	진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위	급	치	용

신사리공동묘지  
용산구청

四二九二년八月六日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남	자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명	약	四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무	
一〇, 자	망	장	소
一一, 자	망	년	월
一二, 자	인	의	자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위	급	치	용

신사리공동묘지  
용산구청

四二九二년八月六日

한강인도코下

四二七〇

九 소 지 품 무	一〇, 자 망 장 소 한강인도코下北方水中
一, 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六日
二, 자	인 익 자
三, 가 매 장 지	심자리공동모지
四, 취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적 한 국
二, 본	적 적 한 국
三, 주	소 불 불 상 상
四, 성	명 불 불 상 상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명 불 불 상 상
七, 인	상 불 불 상 상
八, 착	의 불 불 상 상
九, 소 지 품 무	北漢江二村洞
一〇, 자 망 장 소	四二九二년八월八日
一一, 자 망 년 월 일	胎 兒
一二, 자	인
一三, 가 매 장 지	적 적 한 국
一四, 취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적 한 국
二, 본	적 적 한 국
三, 주	소 불 불 상 상
四, 성	명 안 수 천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명 二 四 세
七, 인	상 불 불 상 상
八, 착	의 불 불 상 상
九, 소 지 품 무	자례병원
一〇, 자 망 장 소	四二九二년八월九日
一一, 자 망 년 월 일	농 흥
一二, 자	인
一三, 가 매 장 지	심자리공동모지
一四, 취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적 한 국

二、본	적	원삼읍송도리
三、주	소	성북구돈암동一의二三
四、성	명	김원 일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三二세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사	망	장소
一一、사	망	년월일
一二、사	인	의 사
一三、가	매	장지
一四、취	급	처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불 상
五、성	별	여 자

한강인도西地方地點  
四二九二년八月一一日  
신사리공동묘지  
용산구청

六、년	명	불 상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사	망	장소
一一、사	망	년월일
一二、사	인	流 産
一三、가	매	장지
一四、취	급	처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불 상
五、성	별	여 자
六、년	명	불 상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한강로二가三〇六  
四二九二년八月一三일  
신사리공동묘지  
용산구청

一〇、자 망 장 소	한강인도교下水中	一〇、자 망 장 소	자대병원
一一、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十三일	一一、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一四일
一二、사 인	源 流	一二、사 인	신장염
一三、가 메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三、가 메 장 지	사리공동묘지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一、국	국	一、국	국
二、본	본	二、본	본
三、주	주	三、주	주
四、성 명	성 명	四、성 명	성 명
五、성 별	성 별	五、성 별	성 별
六、년	三 五 세	六、년	三 四 세
七、인 상	불 상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품	무	九、소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한강인도교下水中	一〇、자 망 장 소	자대병원
一一、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一五일	一一、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一四일
一二、사 인	익 차	一二、사 인	신장염
一三、가 메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三、가 메 장 지	사리공동묘지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一、국	국	一、국	국
二、본	본	二、본	본
三、주	주	三、주	주
四、성 명	성 명	四、성 명	성 명
五、성 별	성 별	五、성 별	성 별
六、년	三 四 세	六、년	三 四 세
七、인 상	불 상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품	무	九、소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자대병원	一〇、자 망 장 소	자대병원
一一、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一四일	一一、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一四일
一二、사 인	신장염	一二、사 인	신장염
一三、가 메 장 지	사리공동묘지	一三、가 메 장 지	사리공동묘지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四二九三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명 불 자 상	六, 년 명 불 상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상	一〇, 사 망 장 소 한강인도교第三碑야下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一五일	一二, 사 인 익사로추정됨	一三, 가 예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최 등 식	五, 성 명 남 자	六, 년 명 남 자	七, 인 명 남 자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상	一〇, 사 망 장 소 한강인도교第三碑야下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一五일	一二, 사 인 익사로추정됨	一三, 가 예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상	一〇, 사 망 장 소 자례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二〇일	一二, 사 인 당 남 염	一三, 가 예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한강로二가三九三	四, 성 명 김 정 애	五, 성 명 여 자	六, 년 명 二一 세	七, 인 명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상	一〇, 사 망 장 소 교동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八월二〇일	一二, 사 인 당 남 염	一三, 가 예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四二七四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장원도이군이전면안의리	
三、주	소	용산구二촌동二九六	
四、성	명	차용대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二九	세
七、인	상	불	상
八、작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三철三下水中
一一、자	망	년	월일 四二九二년八월十八日
一二、사	인	익	자
一三、가	매	장	지 신자리공동모지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불	상
三、주	소	한강로三가六五번지	
四、성	명	이	경열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二八	세
七、인	상	불	상
八、작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코롱병원
一一、자	망	년	월일 四二九二년八월一七日
一二、사	인	약	불중독
一三、가	매	장	지 신자리공동모지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四二七五

五、성	별	어	자
六、년	명	十九	세
七、인	상	불	상
八、차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一一、자	망	년	월
一二、자	인	결	성
一三、가	매	장	지
一四、취	급	처	용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황	해
三、주	소	용	산
四、성	명	신	태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四	九
七、인	상	불	상
八、차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一一、자	망	년	월
一二、자	인	약	불
一三、가	매	장	지
一四、취	급	처	용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불	상
五、성	별	어	자
六、년	명	三	〇
七、인	상	불	상
八、차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一一、자	망	년	월
一二、자	인	익	자

二七六

一、국	적	한	국
一四、위급치	영등포구청		
一三、가매장지	신림리공동묘지		
一二、사인	익사		
一一、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七月二九일		
一〇、사망장소	영등포구당산동선유봉		
九、소지품	무		
八、착의	불상		
七、인상	불상		
六、년령	二三세가량		
五、성별	남자		
四、성명	불상		
三、주소	불상		
二、본적	불상		
一、국적	한국		
一四、위급치	영등포구청		
一三、가매장지	신림리공동묘지		
一二、사인	익사		
一一、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七月二九일		
一〇、사망장소	영등포구당산동선유봉		
九、소지품	무		
八、착의	불상		
七、인상	불상		
六、년령	二三세가량		
五、성별	남자		
四、성명	불상		
三、주소	불상		
二、본적	불상		
一、국적	한국		

五、성별	여자		
四、성명	불상		
三、주소	불상		
二、본적	불상		
一、국적	한국		
一四、위급치	영등포구청		
一三、가매장지	신림리공동묘지		
一二、사인	기차충돌직사		
一一、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八月五日		
一〇、사망장소	소영등포구대방동九二		
九、소지품	무		
八、착의	불상		
七、인상	불상		
六、년령	六五세가량		
五、성명	불상		
四、성별	남자		
三、주소	불상		
二、본적	불상		
一、국적	한국		

四二七七

六、년	명	三十二세가향
七、인	상	불상
八、착	의	불상
九、소	지	무
一〇、자	망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一、자	망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二、사	망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三、가	매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四、위	급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국	적	한국
二、본	적	불상
三、주	소	불상
四、성	명	불상
五、성	별	남자
六、년	명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七、인	상	불상
八、착	의	불상
九、소	지	무

一〇、자	망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一、자	망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二、사	망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三、가	매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四、위	급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국	적	한국
二、본	적	불상
三、주	소	불상
四、성	명	불상
五、성	별	남자
六、년	명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七、인	상	불상
八、착	의	불상
九、소	지	무
一〇、자	망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一、자	망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二、사	망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三、가	매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一四、위	급	영등포구신결중여위도

四二七八

一四, 위	급	처	영릉포구정
一, 국	적	적	한 국
二, 본	적	한	국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명	남	자
六, 년	명	생	후적후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원
一二, 사	인	인	유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위	급	처	영릉포구정
영릉포구선결등四번지 四二九二년八월一〇일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명	남	자
六, 년	명	三〇	세가망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一二, 사	인	인	익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위	급	처	영릉포구정
영릉포구상동화동一一七 四二九二년八월一〇일			
一, 국	적	적	한 국
二, 본	적	적	한 국
三, 주	소	영	릉포구상동산五二
四, 성	명	정	봉
五, 성	명	남	자
六, 년	명	四	六
평북운산군운산면용주리 영릉포구상동산五二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一〇, 사망장소 시집영등포병원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八月八日  
 一二, 사망장소 인 급성최염염  
 一三, 사망원인 지 신림리공동묘지  
 一四, 취급처 영등포구청

一, 국 처 한 국  
 二, 본 처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명 남 자  
 六, 년 명 二〇세가량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一〇, 사망장소 영등포구영등포동삼가一六四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八月二三日  
 一二, 사망장소 인 영양실조  
 一三, 사망원인 지 신림리공동묘지  
 一四, 취급처 영등포구청

一, 국 처 한 국  
 二, 본 처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명 여 자  
 六, 년 명 생후적후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一〇, 사망장소 영등포구양평동三六九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八月二〇日  
 一二, 사망장소 인 교 사  
 一三, 사망원인 지 신림리공동묘지  
 一四, 취급처 영등포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一〇, 사망장소	영등포구신길동一〇번지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八月二七일		
一二, 사망인	영양실조		
一三, 사망장지	신림리공동묘지		
一四, 위급처	영등포구청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명	생후적후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무	
一〇, 사망장소	영등포구본동九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八月二七일		
一二, 사망인	병사		
一三, 사망장지	신림리공동묘지		
一四, 위급처	영등포구청		

四二八

九, 소 지 품 없음

一〇, 사망장소 마포구도정동九六번지전한강변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八월二〇일경

一二, 사 인 불상(不詳)

一三, 가 여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마포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명 여 자

六, 년 명 생후一〇시간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음

九, 소 지 품 없음

一〇, 사망장소 중앙동九三번지제방동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六일

一二, 사 인 사 산

一三, 가 여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성북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명 남 자

六, 년 명 약六〇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없음

九, 소 지 품 없음

一〇, 사망장소 수도의외대학병원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一五일

一二, 사 인 뇌일혈

一三, 가 여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성북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본	적	분	상						
三、주	소	분	상						
四、성	명	이	우	자					
五、성	별	여	자						
六、년	명	十七	세						
七、인	상	분	상						
八、착	의	분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자	혜	병원			
一一、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	九월	一	일	
一二、자	인	결	핵	성					
一三、가	매	장	지	신	자	리	공	동	모
一四、취	급	처	용	산	구	청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한	국						
三、주	소	분	상						
四、성	명	김	애	기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一	세						
七、인	상	분	상						
八、착	의	분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자	혜	병원			
一一、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	九월	五	일	
一二、자	인	肺	結	核					
一三、가	매	장	지	신	자	리	공	동	모
一四、취	급	처	용	산	구	청			
六、년	명	十	六	세					
七、인	상	분	상						
八、착	의	분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자	혜	병원			
一一、자	망	년	월	일	四二九二	九월	五	일	
一二、자	인	肺	結	核					
一三、가	매	장	지	신	자	리	공	동	모
一四、취	급	처	용	산	구	청			

四二八三

一〇, 사 망 장 소	저 해 병 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九월八일
一二, 사	破 傷 風
一三, 가 메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경남부산시초량동
三, 주	소 시대문구복아천동
四, 성	명 김 재 수
五, 성	별 남 자
六, 년	형 二九 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一〇, 사 망 장 소	한강수중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九월四일
一二, 사	익 사
一三, 가 메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전북군익산관북면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원 성 석
五, 성	별 남 자
六, 년	형 十八 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무
一〇, 사 망 장 소	한강수중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九월四일
一二, 사	익 사
一三, 가 메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四二八四

三, 주	소 불, 상	一〇, 사망장소	자혜병원
四, 성	명 김복순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九日
五, 성	별 여자	一二, 사	인 醫 藥 炎
六, 년	명 四三世	一三, 가미장지	신사리공동묘지
七, 인	상 불상	一四, 위급치	용산구청
八, 착	의 불상		
九, 소지	품 무		
一〇, 사망장소	자혜병원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九日		
一二, 사	인 醫 藥 炎		
一三, 가미장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급치	용산구청		
一, 국	적 한국		
二, 본	적 불상		
三, 주	소 불상		
四, 성	명 남자		
五, 성	명 불상		
六, 년	명 불상		
七, 인	상 불상		
八, 착	의 불상		
九, 소지	품 무		
一〇, 사망장소	서빙고동北方八〇〇米		

七, 인	상 불상	一〇, 사망장소	한강인도교第七며아下
八, 착	의 불상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九日
九, 소지	품 무	一二, 사	인 의 자
一〇, 사망장소	한강인도교第七며아下	一三, 가미장지	신사리공동묘지
一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九日	一四, 위급치	용산구청
一二, 사	인 의 자		
一三, 가미장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급치	용산구청		
一, 국	적 한국		
二, 본	적 불상		
三, 주	소 불상		
四, 성	명 남자		
五, 성	명 불상		
六, 년	명 불상		
七, 인	상 불상		
八, 착	의 불상		
九, 소지	품 무		
一〇, 사망장소	서빙고동北方八〇〇米		

四二八五

一、 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二二일  
 二、사 인 死 産  
 三、가 여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四、위 급 처 용산구청

一、국 적 한 국  
 二、본 소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김 기 수  
 五、성 별 남 자  
 六、년 령 七 五 세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사 망 장 소 자해병원  
 一一、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九월二三日  
 一二、사 인 岡 藤 炎  
 一三、가 여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四二八六

一、국 적 한 국  
 二、본 소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김 우 문  
 五、성 별 여 자  
 六、년 령 二 五 세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사 망 장 소 자해병원  
 一一、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九월一七일  
 一二、사 인 結 核 性  
 一三、가 여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위 급 처 용산구청

一、국 적 한 국  
 二、본 소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조 애 기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庄後	七、일
七、인	상	불	상
八、차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一一、자	망	년	월
一二、자	인	각	기
一三、가	매	장	지
一四、취	급	처	용
		산	구
		정	

四二九二년九월一八日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一一、자	망	년	월
一二、자	인	腦	出
一三、가	매	장	지
一四、취	급	처	용
		산	구
		정	

四二九二년九월一九日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불	상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약	三
七、인	상	불	상
八、차	의	불	상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중	남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김	병
五、성	별	여	자
六、년	명	五	〇
七、인	상	불	상
八、차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자	망	장	소
一一、자	망	년	월
一二、자	인	精	神
		分	裂
		症	

四二九二년九월二〇日

四二八七

一三, 자 매 장 지 신자리공동모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처 한 국

二, 본 처 증복 이하분상

三, 주 소 분 상

四, 성 명 전 하 근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명 二 六 세

七, 인 상 분 상

八, 착 의 분 상

九, 소 지 무

一〇, 사 망 장 소 자해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九월二〇일

一二, 사 인 心臟癱瘓症

一三, 가 매 장 지 심자리공동모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처 한 국

四二八八

二, 본 처 강원도양주군

三, 주 소 분 상

四, 성 명 전 제 수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명 六 二 세

七, 인 상 분 상

八, 착 위 분 상

九, 소 지 무

一〇, 사 망 장 소 자해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九월二二일

一二, 사 인 뇌 익 혈

一三, 가 매 장 지 심자리공동모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처 한 국

二, 본 처 분 상

三, 주 소 분 상

四, 성 명 별 남 자

五, 성 별 남 자

九、소 지 물 무	八、착 의 불	七、인 상 불	六、년 명 六八세	五、성 별 남자	四、상 명 정성동	三、주 소 불상	二、본 적 불상	一、국 적 한국	一〇、사망장소 우암동二五八	一一、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二三日	一二、사 인 絞死	一三、가 매장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위 급치 용산구청				
一三、가 매장지 신사리공동묘지	一二、사 인 腎臟炎	一一、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二七日	一〇、사망장소 자혜병원	九、소 지 무	八、착 의 불상	七、인 상 불상	六、년 명 五一세	五、성 별 남자	四、성 명 이종선	三、주 소 불상	二、본 적 경기도개성시	一、국 적 한국	一〇、사망장소 자혜병원	一一、사망년월일 四二九二년九월二六日	一二、사 인 氣管支炎	一三、가 매장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위 급치 용산구청

四二八九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경기도정래군정성면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유	순
五、성	별	여	자
六、년	명	五	三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사	망	장	소
一一、사	망	년	월
一二、사	인	皮	膚
一三、가	매	장	지
一四、취	급	처	용
			산
			구
			청

四二九二년九월二七일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남	자
五、성	별	六〇	세
六、년	명	상	망
七、인	상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사	망	장	소
一一、사	망	년	월
一二、사	인	영	양
一三、가	매	장	지
一四、취	급	처	영
			등
			포
			구
			청

四二九二년九월二一일

四二九〇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불 상  
 五、성 별 남 자  
 六、년 명 생 후 적 후  
 七、인 상 불 상  
 八、학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사 망 장 소 영릉포구영릉포동二가一六三

七、인 상 불 상  
 八、학 의 불 상  
 九、소 지 품 무  
 一〇、사 망 장 소 영릉포구노량진동一一九  
 一一、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九월七일  
 一二、사 인 영양신조  
 一三、가 명 장 지 신희리공동모지  
 一四、위 급 처 영릉포구청

一一、사 망 년 월 일 四二九二년九월八일  
 一二、사 인 유 기  
 一三、가 명 장 지 신희리공동모지  
 一四、위 급 처 영릉포구청

四二九一